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6027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032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0922]

본우리반상

정보공개서

본아이에프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본아이에프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전 화 : 1644-6288 / FAX : 02-730-153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 : 가맹팀 / 1644-6288

[www.bonif.co.kr]

[bondocument@bongroup.co.kr]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본아이에프(주)	본우리반상 외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4.7.20	2004.7.20	이진희, 이성진	1644-6288	02-730-1530
	법인등록번호	110111-3053339	사업자등록번호	101-86-0725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진희	본우리반상 외 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대표이사	이성진	본우리반상 외 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사내이사	김철호	본우리반상 외 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감사	전중학	본우리반상 외 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지배인	이종선	본우리반상 외 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만나계(주)	만나계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54번길 90, 6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철호	02-2633-6982	02-730-1530
			법인등록번호	121111-0427972	사업자등록번호 422-87-0268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본푸드서비스(주)	본우리반상	2021.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임미화, 김철호
		본건강한상	2021.07.01.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본우리반상	한식반상전문점
상 호	본우리반상 ()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1-0363316 호
		등록번호: 제 40-1905533 호
		등록번호: 제 40-1909220 호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96,181,298	70,677,703	25,503,595	248,242,191	12,362,068	10,027,400
2022년	105,432,486	69,960,249	35,472,237	299,122,705	14,395,193	13,004,653
2023년	110,442,854	64,043,607	46,399,247	301,628,648	15,922,028	14,175,541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각 브랜드별 매출액은 당사의 매출원장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상한 및 하한 구간이 없습니다.
- *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중 [본설령탕]과 [곱창 귀걸이를 한 소녀]의 경우, 영업표지 별로 분류가 어려워 그 합계로 기재되었으며, [곱창 귀걸이를 한 소녀]의 경우 2023년 가맹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 * [본우리반상], [본건강한상]은 2021.07. 양수하였으므로 2021년 관련 매출액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본건강한상]의 경우 2023년 가맹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진희	대표이사	2020.03.~현재	본아이에프(주) 대표이사	FC사업부문 대표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이성진	대표이사	2022.01.~현재	본아이에프(주)대표이사	지주부문대표
	김철호	사내이사	2010.03.~현재	본아이에프(주) 사내이사	
	전중학	감사	2023.03.~현재	본아이에프(주) 감사	감사
	이종선	지배인	2006.08.~현재	본아이에프(주) 지배인	지배인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5	-	24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영업표지	등록번호	사업내용
가맹 본부	본아이에프(주)	가맹사업 경영	2002.12.~현재	본죽	20080100243	죽전문점
			2015.01.~현재	본죽&비빔밥	20141221	죽 및 비빔밥전문점
			2010.10.~현재	본도시락	20100100482	도시락전문점
			2015.07.~현재	본설령탕	20150785	설령탕전문점

			2021.05.~2023.03.	곱창 귀걸이를 한 소녀	등록취소	전골전문점
			2016.02.~현재	본우리반상	20160278	반상전문점
			2017.02.~2023.03.	본건강한상	등록취소	반상전문점
			2023.09.~현재	멘지	20231129	일본라멘 전문점
계열 회사	본푸드서비스(주)	가맹사업 경영	2016.02.~2021.06.	본우리반상	20160278	반상전문점
			2017.02.~2021.06.	본건강한상	20170318	반상전문점
	만나계(주)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예정	만나계	20240698	닭요리전문점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 유 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본우리반상 (서비스표)	제품사용 및 대가 수수	2015.12.01. 출원 2016.06.21. 등록	출원 41-2015-0057687 등록 41-0363316	본아이에프(주)	2026.06.21.
본우리반상 (서비스표)		2022.04.19. 출원 2022.09.02. 등록	출원 40-2022-0072579 등록 40-1905533		2032.09.02.
본우리반상 (서비스표)		2022.04.19. 출원 2022.09.14. 등록	출원 40-2022-0072580 등록 40-1909220		2032.09.14.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본우리반상]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6년 02년 03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6년 2월 3일)

2. [본우리반상]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본아이에프(주)	본우리반상	김인호 외 1인	2016.02.03. ~ 2016.08.15.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본푸드서비스(주)	본우리반상	강환영 외 3인	2016.08.16. ~ 2016.12.31.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본푸드서비스(주)	본우리반상	강환영 외 2인	2017.01.01. ~ 2018.05.08.	서울 종로구 종로12길 23, 5층(관철동, 동출빌딩)
본푸드서비스(주)	본우리반상	강환영	2018.05.09. ~ 2018.06.04.	서울 종로구 종로12길 23, 5층(관철동, 동출빌딩)
본푸드서비스(주)	본우리반상	강환영 외 1인	2018.06.05. ~ 2018.12.17.	서울 종로구 종로12길 23, 5층(관철동, 동출빌딩)
본푸드서비스(주)	본우리반상	강환영 외 1인	2018.12.18. ~ 2020.05.30.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 3가)
본푸드서비스(주)	본우리반상	임미화 외 1인	2020.06.01. ~ 2021.06.30.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 3가)
본아이에프(주)	본우리반상	이진희 외 1인	2021.07.01. ~ 2022.01.11.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 3가)
본아이에프(주)	본우리반상	이진희 외 2인	2022.01.12. ~ 2022.04.10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 3가)
본아이에프(주)	본우리반상	이진희 외 1인	2022.04.11. ~ 현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 3가)

3. [본우리반상]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본우리반상	한식	한식반상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본우리반상]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	11	1	11	10	1	14	14	0
서울	4	3	1	5	4	1	8	8	0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1	1	0
인천	1	1	0	-	-	-	-	-	-
광주	1	1	0	1	1	0	1	1	0
대전	-	-	-	-	-	-	-	-	-
울산	1	1	0	1	1	0	1	1	0
세종	-	-	-	-	-	-	-	-	-
경기	3	3	0	3	3	0	2	2	0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2	2	0	1	1	0	1	1	0
제주	-	-	-	-	-	-	-	-	-

*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는 가맹계약 체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본우리반상]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1	4	8	-	1	-	11	+7
2022	11	2	-	3	1	10	-1
2023	10	5	-	1	2	14	+4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 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본부	본아이에프 (주)	본죽	20080100243	한식	891/0	748/0	647/1
		본죽&비빔밥	20141221	한식	657/1	836/1	1,003/1
		본도시락	20100100482	한식	423/1	435/1	439/1
		본설렁탕	20150785	한식	41/1	51/1	50/1
		곱창 귀걸이를 한 소녀	등록취소	한식	40/1	36/1	0/0
		본우리반상	20160278	한식	11/1	10/1	14/0
		본건강한상	등록취소	한식	8/0	9/0	9/0
		멘지	20231129	일식	0/0	0/1	3/3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만나계(주)	만나계	20240698	기타 외식	0/0	0/1	0/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본우리반상] 가맹점사업자 한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 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평균		상한		하한		
		매출액	3.3㎡당	매출액	3.3㎡당	매출액	3.3㎡당	
전체	14	555,373	12,515	1,112,985	29,150	237,924	6,598	5 개점 제외
서울	8	495,144	10,355	911,997	19,777	237,924	6,598	3 개점 제외
부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구	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개점 미만
인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광주	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개점 미만
대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울산	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개점 미만
세종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기	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개점 미만
강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남	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개점 미만
제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점사업자 매출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운영개월 수)*12]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치로 포함하였으나, ①푸드코트와 같이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가맹점 등 면적 정보를 집계할 수 없는 가맹점 매출액과 ②POS(Point of Sales)미사용 등의 사유로 매출을 집계할 수 없는 가맹점의 매출액, ③바로 전 사업연도 7월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가 아닌 [9]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 가맹점 개설팀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본우리반상]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본우리반상]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4	717일 (1년11개월)

* 평균 영업기간은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체결한 가맹계약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본우리반상]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2-729-5600

* 귀하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 또는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esc.wooribank.com)”를 통하여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과 같이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본우리반상]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해야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 급 대 상	예 치 대상 여 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800				
가 입 비	7,7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교 육 비	4,4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교육개시 전 계약해지	교육개시 후 반환불가	
개점점검비	3,3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점검개시 전 계약해지	점검 개시 후 반환 불가	
홍보판촉	1,4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홍보판촉 개시 전 계약해지	홍보판촉 개시 후 계약해지	

* 단,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하는 경우, 가입비는 신규가입비 금액과 동일합니다.

* 가맹금 내역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절차로 인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별첨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홍보판촉”으로 명시된 금액은 오픈프로모션, SNS홍보 등과 같이 오픈 후 점포홍보를 위한 활동에 사용되며 귀하의 점포상황에 맞는 활동을 귀하와 논의하여 진행합니다(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등 필수 진행사항 제외). 이 과정에서 5% 이하의 컨설팅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수수료는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총 계	3,0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이나 대금의 미지급, 손해배상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예치가맹금 내역	금 액
가입비	7,700
교육비	4,400
개점점검비	3,300
홍보판촉	1,4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합계	19,800

* 가맹금 내역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절차로 인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별첨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Ⅳ.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구입 및 입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비고
		82.5㎡ 기준	3.3㎡당		
총 계		112,763	4,510		2024.04.기준
인테리어(내장공사)	(비공개)	52,250	2,090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계약
POS 시스템 등	당사	823	-	주문 7일 전	
간판	당사	6,194	-	제작 10일전	
주방설비	당사	23,173	-	제작 7일전	
주방집기	당사	20,987	-	납품 후 5일 이내	
가구	당사	9,336	-	납품 7일전	
초도물품 비용	당사	실비		납품 후 15일, 말일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내장공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시공 또는 자체시공을 진행할 경우, 당사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점검에 대한 대가로 3.3㎡당 150천원(부가세미포함)을 시공 전까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건물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공사, 상하수도공사, 덕트(입상,급기)공사, 갈바, 소방설비, 식기세척기, 냉난방기/오디오, 주방프린터/무선단말기 구입은 별도입니다.
2. 지식재산권(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는 물품은 당사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3. 주방설비, 주방집기, 가구의 경우 배송비(운반,설치)가 발생합니다.
4. 도서지역(제주도 등) 인테리어 시공은 물류비 등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안내드립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해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점포 확인 → 현장조사 등 입지 분석 → 원하는 지역의 입지 적격 여부 통보 → 부적격시 다른 희망지역 점포 추가조사 ※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 육 기 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건전한 상식과 열정을 지닌 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전염병 질환자가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 업 원	특별한 기준 없음	인성검사 결과 E 등급이 아닐 것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본우리반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 2]**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납부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납부시기를 귀하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 후 가맹금

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로 열 티	가맹본부	POS매출액의 3.3%	당월 마감 익월 5일까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매월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Ⅳ.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업체에 따라 상이	판매채널에 따라 상이				지류 및 모바일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별로 부담	별도 통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가맹본부		간판변경 3일 전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및 영업표지의 사용불능시 기간정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및 영업표지의 사용불능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교체.보수 3일 전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시 교체.보수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인테리어, 간판 교체 비용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시공 3일 전			
지연이자	가맹본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재산종합보험	가맹점사업자 선택 업체	상품마다 상이				보장내용이 유사한 상품 가입
POS 렌탈비	가맹본부	월 28.6	익월 5일	사용계약 발효 전 계약해지 및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POS 유지관리비	(비공개)	월 14.3	익월 청구			

- * 가맹금 내역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절차로 인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별첨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재물손해, 기계위험, 기업휴지, 배상책임이 모두 담보된 보험상품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 * POS(렌탈)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부여됩니다. 계약 개시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구입요구품목의 원가 변동,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공급하지 않는 부분 등의 이유로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며,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가맹점 중 POS(Point of Sales)미사용으로 매출을 집계할 수 없는 가맹점은 차액가맹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 급 기 한	반 환 조 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교육비	별도청구	교육개시 3일전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교육개시전 계약해지시	교육실시 후 반환불가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

*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는 가맹계약의 갱신 시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본우리반상]**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Ⅳ.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점운영권의 매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비고
합계	10,700		
교육비	4,4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개점점검비	3,3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1년 간 계약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영업지역)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계약종료일에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중단일로부터 1년간 계약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영업지역)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당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반환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채무액 및 기타 채권액을 정산한 잔액을 반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본우리반상]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 2], [별첨 3]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나 수급상황 등에 따라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POS공지 또는 서면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본우리반상]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본우리반상]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본우리반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본우리반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의 <상품 · 용역명> 참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및 상권의 특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따른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명	권장 가격	상품.용역명	권장 가격	비고
전라도 영양장어구이 반상	31,900	남도 꼬막 술밥 반상	12,900	권장가격 및 상품명 변경시 POS공지 (2024년 4월 기준)
목은지 우삼겹 만두전골 세트(2~3 인)	27,900	가지 술밥 반상	12,900	
전복 내장 술밥	16,900	(기본) 경상도 육회비빔밥 반상	12,900	
스테이크 술밥	15,900	코다리 비빔냉면	11,900	
삼원가든 뼈없는 갈비탕	15,900	정선 곤드레비빔 반상	11,900	
코다리 비빔냉면과 삼겹수육 반상	14,900	전복미역국	11,900	
주꾸미볶음 화로 반상	14,900	전라도 돌솥비빔밥 반상	11,900	
전복죽	14,900	여수 꼬막비빔밥 반상	11,900	
오징어제육불고기 반상	14,900	코다리 물냉면	10,900	
바싹불고기 화로반상	14,900	야채죽	10,900	
(특) 경상도 육회비빔밥 반상	14,900	서울 불고기 반상	10,000	
코다리 물냉면과 삼겹수육 반상	13,900	야채죽(소)	9,000	
우삼겹 된장찌개와 삼겹수육 반상	13,900	어린이 떡갈비 반상	7,900	
양구 시래기청국장 반상	13,900	담양 떡갈비	6,900	
석갈비 화로반상	13,900	삼겹수육	4,900	
버섯영양 술밥과 되비지찌개 반상	13,900	마늘떡갈비	4,900	
되비지찌개와 깻잎전 반상	13,900	깻잎전	4,900	
더덕제육불고기 화로반상	13,900	감자만두(4EA)	4,900	
팔도 목은지 우삼겹 만두전골 반상	12,900	영양술밥	3,000	
트리플 우삼겹 버섯 돌솥 반상	12,900	되비지찌개(소)	2,500	
진부 황태구이 반상	12,900	깻잎전 2P 추가	2,500	
양념닭구이 화로반상	12,900	공기밥	1,000	
쇠고기야채죽	12,900	본담백한 재래김	5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 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한식반상 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본우리반상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최대 300M 이내 단, 특수상권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대형상가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인 집합건물을 말합니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른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본우리반상]**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본우리반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3	89.48%	10.52%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②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본우리반상]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제1항 제4호
○ [본건강한상]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제1항 제5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0조 제1항 제6호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1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 및 제휴카드의 취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각종 점포설비가 노후 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개선 또는 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41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 및 판촉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1조 제1항
○ 기타 가맹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1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1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과 같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표지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8조 제3항
○ 상권변화(기관입주, 아파트 입주, 백화점입주, 대형마트입주, 재개발, 도로사정의 변경 등)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영업지역이 충돌되어 영업지역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2항
○ 계속가맹금(로열티, 광고판촉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6조 제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 도 절 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및 인성검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1644-4282)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 속	상 속 인 사후통지시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사실 통지→상속 여부 확인(7일 소요) →상속인과 계약체결(5일 소요)	교육수료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본우리반상]**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혼란 및 가맹본부의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1년]**동안 계약상의 동일한 점포소재지에서 당사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식당업(한식반상전문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을 허가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SM팀 (1644-628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본우리반상]**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2시간)	주6일 이상, 월25일 이상	문의 : SM팀 (1644-628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제한없음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의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기점검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본우리반상]**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비율 등 상세 내용 제시 → 가맹점의 광고 참여 결정 → 광고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비율 등 상세 내용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전 또는 후에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전체 가맹점수로 나누어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개별 가맹점사업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우리반상]** 가맹사업의 동일성 및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광고·판촉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가맹본부는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7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유선/온라인 문의, 상담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75	
창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D-70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 확인 -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에 대한 정보 제공	D-65	
확정상담	- 사업계획서 작성 - 외식업 적성검사 실시	D-52	
본사 인터뷰	- 최종 승인여부 결정	D-50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작성	D-38	
인테리어 예가산정 및 확정상담 진행	- 도면 레이아웃 협의 - 인테리어 예가 및 그 외 시설창업비 안내	D-37	
가맹금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35	
인테리어 착공	-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 주방설비, 집기, 비품 입고	D-28 (25일 내외)	
오픈교육	- 이론 및 실습, 점포운영교육 실시	D-20 (10일)	
초도물품 입고	- 원.부재료 초도물품 입고	D-3	
오픈 및 운영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SM팀 (1644-6288)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 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SM팀 (1644-6288)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본우리반상]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본우리반상]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비정기
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개별 가맹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본우리반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 시 POS, 서면 등의 방식을 통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당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본우리반상]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최 소 시 간	비 용	비 고
최초교육	155시간	4,400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별도 통지
보수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별도 통지
선택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별도 통지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점을 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 혜택 제외 및 상품공급 중단이나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 역	명 칭	소재지
1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이 존재하지 않아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법무팀(1644-62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bonjuk.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본우리반상] 물품상세내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본우리반상] 필수공급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의 필수공급품목은 수급상황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POS 등, 인터넷 게시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안내 함.

[본우리반상]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